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 104

제안연월일: 2007. 4.

제 안 자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2개의 조례를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대상에서 제외함(조례안 부칙 제2조).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안 부칙 제2조 제7항 및 제8항을 삭제하고 제9항 내지 제33 항을 제7항 내지 제31항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-⑥ (생략)	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-⑥ (개정안과 같음)
⑦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	(삭제)
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	
<u> 정한다.</u>	
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"경제	
과학국장"을 각각 "투자통상본부	
<u>장"으로 한다.</u>	
⑧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	(삭제)
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	
<u>한다.</u>	
제10조제2항중 "기업지원과장"을 "투	
자유치팀장"으로 한다.	
<u>⑨-③</u> (생략)	<u>⑦-③</u>) (개정안과 같음)